

# 전주강림교회 기독교사회복지재단 정관

제정 2006년1월6일

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본 재단의 명칭을 전주강림교회 기독교사회복지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칭한다)칭한다.

제2조(목적) 이 정관은 전주강림교회가 전개하고 있는 선교와 사랑의 현장되기 위한 구체적 사업인 기독교사회복지재단 사업을 보다 전문화하여 합목적적이며 합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무소의 소재지) ①본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전주시덕진구 금암2동1581-13번지 전주강림교회에 둔다.

제4조 (사업의 종류) ①본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기독교사회복지재단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
2. 강림노인대학 설치 운영
3. 의료선교위원회 설치 운영
4. 강림새날지역아동센터 설치·운영
5. 그 밖에 본 재단운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## 제 2 장 자산 및 회계

제5조 (경비와 유지방법) 본 재단의 자산은 전주강림교회의 지원금, 교인들의 지역 사랑헌금,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6조 (회계의 구분 등) 본 재단의 회계는 복지재단에 속하는 일반회계와 시설 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제7조 (회계의 처리) 본 재단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8조 (회계 연도) 본 재단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.

제9조 (사업계획 및 예산) 본 재단의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전에 의결하여 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사업실적 및 결산) 본 복지재단은 매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 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복지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제 3 장 임 원

제11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이 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1인
2. 이사 5인 이상 13인 이하(이사장 포함)
3. 감사 2인

제12조 (임원의 선임) ①이사장은 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며, 이사는 본 교회 제직인 자 중에서 선정하고 감사도 본 교회 제직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
제13조 (임원의 임기 등) ①본 재단의 이사장 임기는 본 교회 재직하는 기간 당 연직으로 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,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.

제14조 (임원의 결격사유) 임원이 타 교회로 이명하거나 중대한 치리를 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.

제15조 (임원의 해임) ①이사장은 재단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법령, 재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
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
3. 직무태만·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
4.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

제16조(임원의 직무) ①이사장은 이 재단을 대표하고,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회의 의장이 된다.

②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, 이사회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③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 이사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장로로 하되 장로 임직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1. 본 재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는 일

제17조 (대표권의 제한) 본 재단의 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본 재단을 대표 하지 않

는다.

제18조 (임원의 대우) 이 재단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9조 (겸직 금지) ①이사는 본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.

②감사는 본 재단의 이사,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.

## 제4장 이 사 회

제20조 (이사회 구성) ①본 재단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.

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21조 (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
2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3.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
4. 사업계획·실적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5. 재산의 취득,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6. 재단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
7. 재단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
9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
제22조 (이사회 소집 등)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
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.

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23조 (이사회 개회와 의결정족수)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제24조 (의결제척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재단과 직접 관계되

는 사항

제25조 (이사회 회의록)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③이사장은 의사록을 본 복지재단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
## 제 5 장 사무조직 및 운영

제26조 (사무국) ①본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사무국을 둔다.

②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27조 (직원) ①재단은 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

②직원의 임용·복무·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
## 제 6 장 재단운영 위원회

제28조(위원회 구성) 본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문가가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되는 기독교사회복지재단운영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칭한다)를 둔다.

제29조(기능)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.

1. 본 재단의 이사회의 완전 구성 전까지는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한다.
2. 복지재단기관의 사업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그 운영 방침을 정한다.
3. 복지재단 기관의 사업을 심의한다.
4. 교회사회복지에 관한 교육 및 복지사업 및 행사를 추진한다.
5. 재단의 사업을 평가 분석하여 사업의 개선을 도모한다.
6. 재단활동의 홍보, 기록 유지를 담당한다.

제30조 (위원의 자격) 위원의 자격은 전주 강림교회 교인으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대학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자로 한다.

제31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이 복지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위원장 1인
2. 총무 1인
3. 서기 1인
4. 회계 1인
5. 위원 5인 이상 15인 이하(위원장, 사무국장, 서기, 회계 포함)

제32조 (임원의 구성) ①위원장은 전주강림교회 당회에서 임명한다.

②총무, 서기, 회계, 감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.

제33조 (임원의 임기 등) ①본 위원회의 위원장의 전주강림교회당회의 규정에 따르

고 다른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②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.

제34조(임원의 직무) ①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,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②총무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업무를 장리하고 사무를 처리한다.

③서기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기록 유지한다.

④회계는 위원회의 회계업무를 담당한다.

제35조 (위원회 소집 등) ①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정기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, 임시이사회는 홀 수 월에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.

③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36조 (위원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) ①위원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7조 (위원회 회의록) ①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참석위원 전원을 기명하고, 위원장과 서기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.

③위원장은 회의록을 위원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
## 제 7 장 강림노인대학 운영

제38조(규정의 제정) 강림노인대학 운영의 규정은 향후 새로운 운영 방향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의 강림노인대학의 운영 규정에 의하며 따로 당분간 정하지 아니한다.

## 제 8 장 의료선교위원회 운영

제39조(규정의 제정) 의료선교위원회의 운영 규정은 기존의 의료선교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며 필요가 있을 때까지는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.

## 제 9 장 강림새날지역아동센터 운영 위원회

제40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센터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림새날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센터운영위원회라 칭한다)를 구성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운영위원회를 재단 위원, 센터 위원, 교회 제직 위원 및 지역사회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로 한다.

제41조(위원회 기능) 센터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기능을 갖는다.

1. 센터운영위원회 운영 내규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
2. 강림새날지역아동센터 운영
3. 강림새날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 사항
4. 강림새날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5. 기타 강림새날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센터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
제42조(위원의 선출 등) ① 본 재단 이사장과 재단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센터운영위원회 위원이 되고, 센터의 장도 당연직 센터 종사자 위원이 되며, 전주강림교회 제직위원과 지역위원은 어린이 보육과 교육에 식견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.

② 교회제직위원은 재단운영 위원회의 추천자 중 본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다.

③ 지역위원은 센터위원 재단위원과 교회제직위원, 센터종사자 위원이 추천한 자 중에서 복지재단 이사장이 위촉한다.

④ 센터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를 두되 위원장은 본 재단 이사장이 되며, 유고시에는 재단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대행하고, 간사는 센터의 사회복지사로 한다.

제43조(운영위원회의 자문 등) ①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

제44조(규정 등에의 위임) 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닌 한 사항은 센터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

## 제 10 장 정관 변경

제45조 (정관 변경) 이 복지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.

## 제 11 장 보 칙

제46조 (준용 규정)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,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.

제47조 (운영규정)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정관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위원회가 설립당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.